

2020년도 제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20. 2. 25.(화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 : 김경숙(분과위원장), 박재화, 박정인, 최현용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- 의결사항 ※ 안건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 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제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5건(안건번호 제2020-5858호~5887호).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위원 : 위 안전은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아니하므로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함. 다만, 이미 삭제되어 있거나, 전송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할 것임.
- B위원 : 본 사건은 웹하드 사이트(♣♣♣♣♣♣, ●●●)에 최근 개봉한 저작물(만화, 영화 등)들을 불법 공중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.
- C위원 : 본 심의대상 35개 안전은 영화, 방송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공중에 영리를 위해 전송하는 것임.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때 영리 목적으로 공중에 전송한 사실이 있고 저작물의 공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D위원 : 본 심의대상 안전 복제물들(안전번호 제2020-5858호~5887호)은 웹하드형 온라인서비스에 게시된 자료들로서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과 최신 영화들임. 이들은 모두 창작자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영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라 볼 수 있음. 이들을 상업 목적의 웹하드 사이트들에 게시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법

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2020년 제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3. 2.

분과위원장 김경숙

위원 박재화

위원 박정인

위원 최현용